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0,361,049	13,510,831
일반회계	392,880,290	11,786,409
특별회계	57,480,759	1,724,423
공기업특별회계	24,164,907	724,9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164,907	724,947
기타특별회계	33,315,852	999,476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69,500	8,08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088,965	32,6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03,955	36,119
자활기금특별회계	2,165,656	64,970
수질개선특별회계	22,172,509	665,17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258,867	157,76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56,400	34,69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48,81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